

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(안)

본 공고는 6기(2022년~2024년)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합니다.
단, 코로나19로 사용기회가 제한된 기존 5기(2019년~2021년) 회원은 서비스기간 2년 연장 또는 6기 신규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2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5기 회원은 붙임2의 연장신청서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5기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2023년 말에는 신규모집이 없는점 및 6기 신규 회원 신청 시 선정가능성 여부 등을 잘 검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 모집 개요

□ 신청자격 : (가)항목 또는 (나)항목 우수기업

(가) 수출금액('20년) 2백만 US\$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('18년 ~ '20년) 연평균 5% 이상 수출증가 기업

(나) 상시근로자('20년)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('18년 ~ '20년) 연평균 2% 이상 고용증가 기업 (상시근로자 기준)

□ 6기 회원기간 : 2022. 1. 1 ~ 2024. 12. 31 (3년)

※ 5기 회원 기간 연장 시 이용기간 : '22.1.1 ~ 23.12.31 (2년)

□ 제공서비스 :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(동반 3인까지)

※ 타 출입국우대카드(ABTC카드 등)와 동일 서비스

□ 모집인원 : 신청자격 부합자

□ 선정방법 :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/부적격 확인

□ 신청 제외자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공공기관
- 「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」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
- 2018. 1. 1일 이후 설립된 기업
-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

2 6기 신규신청자 제출 서류

① 출입국우대카드 신청서 1부	붙임1
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*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는 “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” 제출	필수
③ 사업자등록증 1부	필수
④-(가) 수출실적 확인서류 1부 (‘18년~’20년) -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증명서 - 직접수출 해당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* 실적증명서 관련 문의 사항 : 무역협회(1566-5114)	(가)항목 우수기업
④-(나).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-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 1부	(나)항목 우수기업
⑤ 납세증명서(기업, 신청인 개인) 및 ⑥ 지방세증명서(기업, 신청인 개인) 각 1부 * 기업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신청인개인 국세, 지방세납세증명서 총 4부	필수

3 5기 연장신청자 제출 서류

① 연장신청서(5기 회원 중 서비스기간 연장 신청 기업에 한함)	붙임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4 서류 제출방법 및 일정

□ 업무처리 절차

절차	경제단체 신청서류 접수	서류접수 기재내용 확인	신청자격 확인	결격사유 검증 타우대카드 중복 확인	대상자확정 카드 발송
주체	신청기업→ 경제단체	각 경제단체	공항공사	법무부 공정위 관세청	공항공사 법무부
일정	10.5~10.25 (3주)	10.26~11.1 (1주)	11.2~11.19 (3주)	11.22~12.3 (2주)	12.10~12.17 (1주)

□ 신청 접수마감 : 2021년 10월 25일(월) 18:00까지

□ 제출방법 : 서류 및 기업정보(Excel양식) 모두 제출

구분	제출처	제출방법
신청서류	각 해당 경제단체	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
기업정보	경제단체 홈페이지 참조	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Excel 양식으로 작성, 전자파일 제출

*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

※ 각 경제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서류(신청서) 및 기업정보(Excel)를
2021년 11월 2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제출

□ 선정결과 발표 (예정) : 2021년 12월 10일

- 선정기업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통보(SMS)

5 결격 사유

- 신청일 현재 납세 및 지방세증명서상에 세금체납(증명서에 “체납 처분유예액”이 있는 경우도 체납에 해당) 있는 자[법인·개인]
-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출입국규제자로 등록된 자[법인·개인]
-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[법인] (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)
- 최근 2년 이내 다음의 관세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[법인·개인]
 - * 관세법 제268조의2, 269조, 270조, 270조의2, 271조, 274조, 275조의2
 - * 조세범처벌법 제3조
 - * 외국환거래법 제18조, 27조, 27조의2, 28조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법무부장관이 우대카드 발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자 (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제6조)

※ 기업인 선정 이후라도 허위기재사실·결격사항 발생 및 파산/부도가 확인 될 경우 「기업인공항공우대서비스」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.
(결격사항 발생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 예정임)

6 유의사항

- 가입되어 있는 아래 경제단체 중 반드시 1개 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	www.fki.or.kr	한국무역협회	www.kita.net
대한상공회의소	www.korcham.net	중소기업중앙회	www.kbiz.or.kr
한국외국기업협회	www.forca.org	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	www.fcas.or.kr
한국수입협회	www.koima.or.kr	한국향만물류협회	www.kopla.or.kr
주한미국상공회의소	www.amchamkorea.org	주한유럽상공회의소	www.ecck.eu

-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고, 붙임3 「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」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신청서는 소관 경제단체장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.
-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1인(신청인)에게만 카드가 발급됩니다.
- 본 공고문에 별도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의미합니다.
- 접수마감 후 서비스 시행 중에는 일체의 추가모집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서비스 희망 기업은 반드시 금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추후 인천공항 운영정책 변경 시 본 제도는 회원 만료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(붙임)

1. 신청서 양식 (필수제출)
2. 연장신청서 (5기 회원 중 서비스기간 연장신청에 한함)
3. 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

(붙임1)

출입국우대 카드 신청서

○ 신청사유	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투자자 (선정기관: KOTRA)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종사자(선정기관: 관세청)
<input type="checkbox"/> 모범납세자 (선정기관 : 국세청)	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기술유공자(선정기관: 과학기술정보통신부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업인카드 소지자 (선정기관: 국토교통부)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창출우수기업종사자 (선정기관: 법무부)
<input type="checkbox"/> 동반성장우수기업 종사자 (선정기관: 동반성장위원회)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예술 후원 인증업체 종사자 (선정기관: 문화체육관광부)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(선정기관: 여성가족부)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생협력우수기업종사자(선정기관: 중소기업청)
<input type="checkbox"/> 출소자고용우수기업 종사자 (선정기관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)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자녀(선정기관: 국가보훈처)
<input type="checkbox"/>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종사자(선정기관: 법무부)	<input type="checkbox"/> 조건부 고액투자자(선정기관: 법무부)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금융투자자 (선정기관: 금융감독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사유: _____)

○ 공통기재 사항								
성명	성(영문)			명(영문)		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M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F
생년월일	년	월	일	국적		연락처		
여권번호				여권 발급일자		여권 유효기간		
주소 (카드수령지)								
실무담당자	• 성명:		• 부서/직위:		• 휴대폰:			

○ 추가기재 사항					
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대표자명		법인등록번호			
【개인정보 수집·이용】			【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】		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	출입국우대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우대 카드 발 급 관련 제반 목적	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	법무부, 카드발급 대행기관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	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카드 발급 및 카드 유효성 확인 관련 제반 목적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출입국우대 카드 유효 기간	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좌 동
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	여권번호				좌 동
수집하는 일반 개인정보 항목	신청서류에 명시된 성명, 생년 월일, 성별, 주소, 국적, 연락처				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 거 부 시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.				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모두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					

【주의사항】

1.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출입국 규제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.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선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신청일 Date of application		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/seal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

(붙임3)

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

○ 신청사유

- 체크되어 있는 “기업인카드소지자 (선정기관: 국토교통부)” 항목으로 신청
-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지침에 따른 분류로써, “기업인카드”는 별도로 없으며 최종 선정 후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제공 예정

○ 공통기재 사항

- 성명/ 성별/ 생년월일/ 국적/ 여권정보 : 카드 사용자 정보 기재
* 등기임원에 한하며, 실제로 출입국우대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기재
- 연락처 : 개인 연락처 기재
- 실무담당자 : 신청인을 대리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직원 인적사항 및 연락처

○ 추가기재 사항

- 법인명 : 사업자등록(법인등록)증에 명기된 “기업명”을 기입
- 대표자성명 :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“대표자 명”을 기입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
- 전화번호 : 직장 연락처 기재
- 개인정보 관련사항 동의여부 체크
- 신청일 : 신청날짜. 2021년 O월 O일로 기재
- 신청인 서명 또는 인 : 신청인 서명 또는 법인 직인

○ 신청자격 사항

- (가)수출우수 또는 (나) 고용우수 중 한 가지 항목만 작성
- 금액 단위는 “만US\$”이며 이하수치는 반올림하여 명기

(가) 수출우수

- 무역업고유번호 : 수출분야 신청자 중 “무역업고유번호”가 있는 기업은 기입
- 수출실적 : 2018, 2019, 2020년 직접수출 또는 해외공사수주 금액 모두 기재
 - ▶ 직접수출 : 간접수출을 제외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인정하는 직접수출금액
 - ▶ 해외공사수주 :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 실적증명서상의 해당년도 금액

(나) 고용우수

- 2018년, 2019년, 2020년 해당년도 결산월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에 명기된 연말 정산(A04) 인원으로 기입

○ **결격사유 해당여부**

- 공고문 '04. 결격사유'의 각 항목에 유/무 사항 표시

○ **작성문의처 (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소속 경제단체)**

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	☎ 02-6050-3873, 3880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9층(우04513)
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팀	☎ 02-3771-04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빌딩 46층 회원팀(우07320)
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	☎ 02-2124-3164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(우07242)
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	☎ 1566-51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(우06164)
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	☎ 02-3485-8392 서울 강남구 은주로 711 건설회관 4층(우06050)
주한미국상공회의소	☎ 02-6201-2211
주한유럽상공회의소	☎ 02-6261-2700
한국항만물류협회	☎ 02-924-2113
한국외국기업협회	☎ 02-3462-0507
한국수입협회	☎ 02-793-2464
인천국제공항공사 CIP회원관리	☎ 032-741-0015, 0016